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중복관할 확대 등〉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54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주요내용	4
2. 현행제도	7
3. 개정안 검토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9. 10.
3. 회 부 일: 2025.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특허권등 이외의 지식재산(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민·형사 소송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민사 본안소송 관할집중 대상인 특허권등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소송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관련 형사소송도 관할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형사사건 관할집중 대상법률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와 동일(「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하게 제4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4조의2 각 호 법률의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을 관할집중 대상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지식재산권 등 형사소송 사건의 경우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을 규정(현행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한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토지관할 법원(이하 “토지관할 법원”)과 중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수도권)과 대전지방법원(수도권 이남)(이하 “관할집중 법원”이라 함)에도 관할을 인정함(안 제4조의 2 신설).

다. 토지관할 법원은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관할집중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관할집중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토지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할집중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되, 토지관할 법원에서 재판한 지식재산권 등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마.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도 관할집중 대상으로 포함하여 특허법원 관할로 함(안 제2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3호),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1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형사사건 중복관할 도입

개정안은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관할집중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특허법 등의 벌칙 위반 사건을 “지식재산권 등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기존 토지관할 법원¹⁾과 중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수도권) 또는 대전지방법원(수도권 이남)에도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토지관할) <u>다음 각 호 위반 사건(이하 “지식재산권 등 사건”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 또는 수원고등법원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 대전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u> 1. 「특허법」 제12장 2. 「실용신안법」 제10장 3. 「상표법」 제12장 4. 「디자인보호법」 제11장 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장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u>법률」 제7장</u>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u>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u> <u>18조의5까지,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u> <u>20조</u>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u>한 법률」 제6장</u>
--	--

나. 토지관할 법원과 관할집중 법원 간 이송규정 신설 등

토지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관할집중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 가능하고, 관할집중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토지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 가능하도록 하며, 관할집중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토지관할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도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특허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무혐의처분 재정신청사건도 관할집중 대상으로 포함하여 특허법원 관할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 ② (생략) ② ~ ⑦ (생략) <u><신 설></u>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u>③ 법원은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경우</u>

- 1)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居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사건을 제4조의2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4조의2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의2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결정으로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제8조제3항에 따라 제4조의2에 따른 관할법원이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	⑤ 제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외의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허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

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 ----- ----- ----- ----- -지식재산권 등 사건에 관하여는 특허법원을 말한다. 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 ----- -----.
--	---

2. 현행 제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함.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편의와 심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규정으로, 형사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대법원도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²⁾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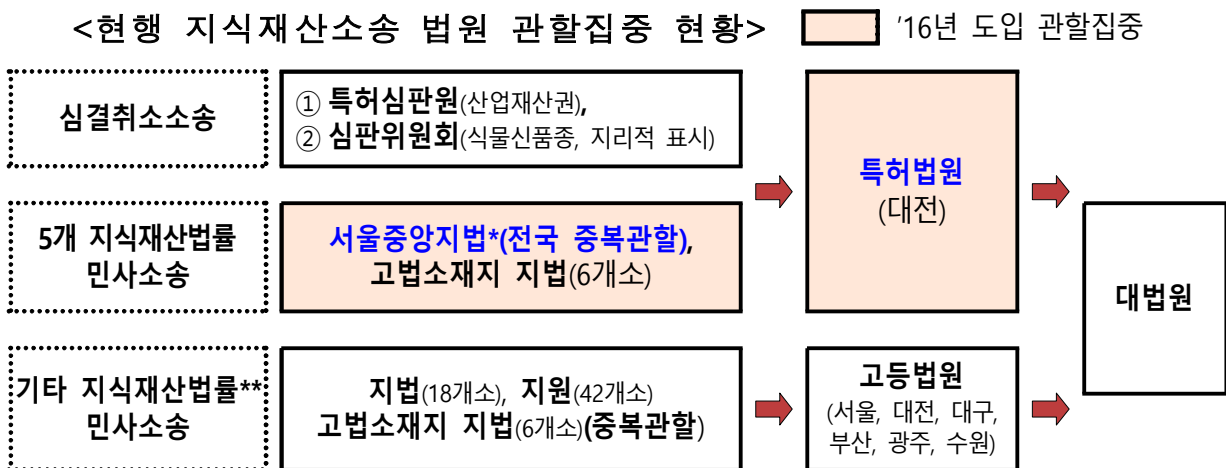
민사소송법 제24조³⁾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3) 「민사소송법」 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이하 “특허권등”)에 관한 소를 해당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하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 되며, 특허법원은 이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⁴⁾하여 관할집중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는 5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이하 “특허권 등”)에 대한 1심은 전국 6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 어디서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중복관할을 인정함.



* 1차 관할집중 시행 이후, 5년간 선고된 특허침해소송판결 380건 중 서울중앙지법이 과반 (208건, 55%)의 사건을 처리함(출처: 지식재산처 정책연구보고서(2021.5))

** 기타 지식재산법률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저작권법 등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 등 중복관할 법원으로 1심 관할을 집중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 및 사법행정 효율성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 보호 및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취지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까지 관할집중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관련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심리를 전문법원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재판의 전문성과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적·전문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토지관할을 유지하면서 관할집중 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사건 이송을 허용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고려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관할집중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관할집중 법원과 기존 토지관할 법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전문성·효율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 지식재산 관련 형사사건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의

출석 및 사건의 이송에 따른 절차적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법원행정처는 관할집중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사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관할 집중의 필요성,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본 개정법률안은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24.12.12.)에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심의·의결한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지식재산 관련 정부부처⁵⁾와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학계·법조계·산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오랜 기간('23.1월~'24.12월) 심도 있는 논의 및 합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이라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3

5)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가유산청,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참 고

주요국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동향

국가	세부 내용
 [미국]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으로 관할집중 확대 ■ '82년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해소송 항소심(2심) 및 美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처분 불복 전속관할 ■ '96년부터 연방법원이 경제스파이법(EEA) 형사제재, '16년부터는 영업비밀보호법(DTSA) 민사소송 및 형사제재도 전속관할
 [유럽연합]	EU전역에 특허침해 민사소송 및 민사가처분가압류소송 관할집중 도입 ■ '23.6월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은 특허침해소송, 특허 무효·취소 소송 등뿐만 아니라, 가처분·가압류 등 잠정적 보호조치도 관할 ※ 포르투갈('11), 영국('10~'15), 스페인('17) 등도 관할집중 도입
 [일본]	기술형 사건 뿐 아니라 부정경쟁·저작권 등 비기술형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 ■ (1심 관할집중) '96년에 기술형(특허, 실용, 회로배치설계 등) 및 비기술형(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등) 사건 도쿄·오사카지방법원소 중복관할 → '04년 기술형 사건에 한하여 도쿄·오사카 전속관할 인정 ■ (2심 관할집중) '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기술형 사건에 대한 2심의 경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전속관할 시행
 [중국]	특허·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반도체배치설계 등에 민사·행정소송 관할집중 ■ 특허, 신제품, 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회로배치설계 등 1심은 3개 지식재산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관할집중('14) → 지식재산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모두 관할
 [대만]	지식재산 관할집중이 민사·행정에서 시작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 ■ '08년 지혜재산법원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식물품종, 회로배치설계 등 지식재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전담 ■ '23. 8월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 유출 형사사건 1심부터 시작 강화
 [베트남]	지식재산 민형사 및 행정 소송을 전담하는 1심 전문법원 설립 ('25.1~) ■ '24.6월 국회에서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에 지식재산소송* 1심 전문법원 설립 법률 통과 → '25.1월부터 민사 및 행정 소송 담당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등
 [브라질]	지식재산소송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지식재산소송 전문법원 설립 ■ '23.9월 브라질 지식재산청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지식재산 소송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하였고, 특허·상표 관련 소송 1·2심 담당

※ 전세계적으로 90개국이 지식재산소송 전문 법원·재판부 운영 중(EUIPO, '18)